

의안번호	제10호
의결연월일	2018. 3. 13.

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3월 6일 논산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8년 3월 6일
- 다. 상정일자 : 2018년 3월 13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사회복지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통하여 발굴된 서로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불편 및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와 별표의 내용이 상충되어 별표에서 규정한 순위 삭제 (제7조 관련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